

◎환경부공고 제2021-484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157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29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클린룸 등 밀폐시설에서 동일한 생산시설 및 공정을 운영 중인 업종(반도체, 영상표시장치)에 대한 대표설비 검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가. 클린룸 등 밀폐시설에서 동일한 생산시설 및 공정을 운영 중인 업종(반도체, 영상표시장치)에 대한 대표설비 검사 근거 마련(제4조의2, 별표1 신설)

3. 의견제출 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 044-201-6844,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island@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정기검사시에”를 “정기검사 시까지”로 한다.

제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대표설비 검사) ① 클린룸 등 밀폐시설에서 동일한 생산시설 및 공정을 다수 설치하려는 자(반도체 및 영상표시장치 업종으로 한정한다)가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체 시설 중 일부를 대표설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설비를 인정받은 자는 규칙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중 법 제24조에 따른 검사결과서로서 대표설비의 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표설비의 검사 결과를 제출한 경우 대표설비 외 나머지 동종설비의 설치검사는 대표설비의 차기 정기검사 시까지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중 “[별표1]과”를 “별표 2와”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대표설비 인정요건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 프로그램(KORA)의 검증을 실시하고 누출원을 중심으로 사고 영향거리 분석 및 영향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2. 건축물은 해당 설비 위치에 따라 내·외부 공간으로 구분하고 내·외부간 공기순환은 별도의 환기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며, 해당 시스템으로 유해화학물질 유·누출을 사전에 차단해야 함.
3. 채광, 환기, 통행, 출입 등의 용도로 쓰이는 개구부(開口部)는 상시 닫혀진 상태에서 운영해야 함.
4.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확산 방지를 위해 취급시설 커버를 설치해야 함.
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별표 5)을 준수해야 함.
6. 위의 요건을 충족한 건축물 및 시설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가 제출한 생산설비 설치계획서상 대표설비와 유사한 설비로써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설비

